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17호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감면대상 중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을 시장이 교부한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을 부착한 차량으로 변경함(안 별표 1 비고 제14호).

3.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전화 042-270-5132,
FAX 042-270-5049, E-mail : lgsung64@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교의 제14호 중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을 “시장이 교부한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비교의 제1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별표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제3조 관련)</p> <p>[비고] 1. ~ 13. (생략)</p> <p>14. <u>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u> <u>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u> <u>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u> <u>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u></p> <p>15. ~ 17. (생략)</p> | <p>[별표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제3조 관련)</p> <p>[비고] 1. ~ 13. (현행과 같음)</p> <p>14. <u>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증</u></p> <p>15. ~ 17. (현행과 같음)</p>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관 련 조 례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제정) 2013-04-19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3년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수수료 감경
 2.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 ② 시장은 유공납세자에게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